"시니어의 당당한 사회참여, 즐거운 동행"

광주북구시니어클럽

수 신 광주 북구관내 유치원장

(경 유)

제 목 2027년 유치원연계지원사업 수요처 모집 및 사업 안내 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광주북구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고 일자리에 대한 욕구충족과 경제·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입니다.

3. 광주 북구 관내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27년 유치원연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파견을 희망하는 유치원에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

붙 임 : 1. 유치원연계지원사업 안내 1부.
2. 유치원연계지원사업 신청서 1부.
3. 노인일자리 수요처 행동강령 1부. 끝.

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장

10/19

담 당 홍계순 팀 장 조현모 관 장 송윤주

협조자

시 행 북시26-285 (2026. 10. 19) 접수 ()

우 500-869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94-6 / http://www.silver114.or.kr
전 화 062-512-3521 FAX 062-512-3524 / gjcsc@hanmail.net / 공개

유치원연계지원사업 프로그램 안내

■ 노인역량활용 유치원연계지원사업

유치원연계지원사업은 돌봄, 급·간식지원, 원내환경정리, 텃밭정리 화단정리 등을 지원하는 1·3세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.

■ 사업 운영 안내

구 분	노인역량활용 유치원연계지원사업	비 고
대상	북구 관내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	
근무기간	2월~11월(10개월) ※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될 수 있음	
근무일	일 3시간, 주5일, 월 60시간	시니어클럽 교육 포함
근무시간	기관 사정에 따라 시간은 자율 조정	오전7시 이전, 오후6시 이후 근무 배제
근무인원	1개소당 1명~4명 파견(남녀 모두 가능)	
근무내용	돌봄지원,급·간식지원,원내환경정리,텃밭·화단정리	※화장실 청소는 낙상 위험으로 가능한 지양

※노인역량활용 사업이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

■ 휴원 및 폐원 예정인 수요처는 신청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■ 신청기한: 2026년 11월 02일(월) 09:00 ~ 2026년 11월 06일(금) 18:00

■ 유치원연계지원사업 파견실적(최근3년)

파견연도	파견 기간	파견 유치원 수	파견 인원
2024년	2월~11월(10개월)	북구 지역 내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 69개소	148명
2025년	2월~11월(10개월)	북구 지역 내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 71개소	144명
2026년	2월~11월(10개월)	북구 지역 내 국·공립 및 사립유치원 69개소	148명

수요처 신청 작성안내

■ 선발 기준

1. 참여자 선발인원의 주소지에 따른 배치
 ※인근 거주 참여자가 없을 시 선발 제외
2. 참여자 체력적 부담완화를 위해 2명 이상 배치가 가능한 수요처 우선 배치
3. 사업 진행에 따라 선발 여부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

■ 파견 제외 수요처

- 2026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시 참여자들의 인권침해 등 문제가 제기된 기관

■ 수요처 협조 요청

1. 협약서 체결
2. 참여자 출근부 서명
3. 사전 사후 설문조사 실시
4. 시니어클럽 담당자 현장 방문(사진촬영 포함)
5. 참여자 출결 관리 (미 출근 시 기관 연락), 인권준수
6. 참여자 성범죄 조회 수요처에서 관리(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)
7. **보건증 및 잠복결핵검사 발급 비용 수요처 부담입니다.**

※근무 중 참여자의 인권침해, 일자리 업무를 제외한 과도한 업무부과 및 근무시간 초과 등 문제 발생시 수요처 중도 철회 가능 합니다.

■ 신청등록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

-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카페 http://cafe.daum.net/gjcsc 에 접속.

→ 노인역량활용 → 유치원연계지원사업

- 팩스와 메일은 누락 위험으로 카페 신청만 받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기한: 2026년 11월2일(월) 오전9시 ~ 2026년 11월 6일(금) 오후 6시

★.담당자 성명 / 핸드폰 번호 / 메일 주소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.★

- 문의전화 : (062) 512-3521 유치원연계지원사업 담당자 :홍계순

27년 유치원연계지원사업 서비스 수요조사 및 신청서(수요처용)

<table>
<tr><td>신청기관</td><td colspan="2">유치원</td><td>사업자번호
(고유번호)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청자(대표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요구분야</td><td colspan="4">☐ 돌봄도움 ☐ 급·배식 도움 ☐ 원내환경정리 ☐ 텃밭,화단관리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희망시간
인원</td><td colspan="4">☐ 오전 : 시 분 ~ 시 분 (명)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☐ 오후 : 시 분 ~ 시 분 (명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기간</td><td rowspan="2">~</td><td rowspan="2">근무 형태
(주 소정근로
15시간)</td><td colspan="2">☐ 주5회 ☐ 주3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☐ 주2회 ☐기타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서 비 스
이용현황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3">☐ 이용하지 않음 (신규신청)

☐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
(사업명 :)

☐ 타기관 서비스 이용
(기관명 : , 사업명 :)</td><td>이용시기</td><td>☐ 2025년
☐ 2026년
☐ 최초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수요처 안전실태조사를 위한 설문*</td></tr>
<tr><td>위험성평가
실시여부</td><td>☐ 실시
☐ 미실시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○ 본 기관은 "수요처 행동강령"을 준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.
○ 본 기관은 위와 같이 노인역량활용사업 서비스 이용(제공)을 희망하며,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○ 본 기관은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, 사고발생 시 피해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지원에 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기관 유치원
신 청 인 (인 또는 서명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종합
의견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</td><td>수행기관명</td><td>광주북구시니어클럽</td></tr>
<tr><td>담당자</td><td>홍계순</td></tr>
</table>

*위험성평가 실시여부는 안전실태조사를 위한 단순 설문으로, 서비스 신청과는 무관

노인일자리 수요처 행동강령

□ 행동강령 검토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, 수요처는 참여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, 안정된 환경 속에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시켜서는 안 된다.

* 참여자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청소, 조리 및 가사 등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수요처장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행위 강요 등

**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수요처와 참여자 간 활동내용을 변경·추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양자 간 합의 실시

○ 수요처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수요처의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수행기관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* 신체적 학대(폭행, 구타, 구속 및 협박 등), 정서적 학대(폭언, 무시, 기피, 따돌림 등), 성적 학대(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 등), 경제적 학대(활동비 착취 등)

○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, 참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, 침해받는 경우 회복과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* 수요처 재배정 및 서비스 제한 등

2.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하는 환경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.

○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정해야 한다.

* 안전교육 실시 필수 및 사업 시작 전 상해보험 가입 등

○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*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처 간담회 등 실시, 안전장비 구입·지급 등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활동 중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입해 병원에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하고,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수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.

○ 수요처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혹한기·혹서기 등 활동이 힘든 시기에 노인의 건강상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 월 15시간 이내 단축운영, 혹서기·혹한기 대비 참여노인 교육 등

3.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활동 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, 사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지 않는다.

○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활동 중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.

4.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, 투표 등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,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,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5.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
○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 간담회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나 그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○ 수요처 및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그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6.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일률적인 헤어스타일 및 옷차림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

* 활동을 위한 유니폼 착용 제외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

○ 수요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헌금, 공양,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